

『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
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송용자 의원 외 7명

2. 제안이유

- 사회적경제는 재화의 생산과 판매를 통한 경제적 기능을 넘어 공공기관이 다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우리 사회에 실현하는 대안적 사회·경제체제임.
-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및 공고, 구매실적 결과 작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
-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및 우선구매 예외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-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시행(안 제11조)
- 구매실적 우수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·소비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단체, 개인에 대한 포상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
「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19. 8. 30. ~ 9. 6.) 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임.
-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소득 양극화, 사회적 약자의 소외 등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- 그러나 구미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아직 그 규모가 영세한 수준으로 공공기관 중심의 적극적인 육성책이 필요한 상황임.

<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>

(2019. 9월 현재)

구 분	사회적기업		마 기 을 업	협 조 동 합	사 회 적 협 동 조 합	자 활 기 업	비 고
	인 증	예 비					
113	9	7	5	79	7	6	

○ 검토 결과,

-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, 사회적경제 기업이 재정적으로 자립 가능하고 민간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여 지역공동체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성장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.
-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제 활동을 진작시켜 경제활성화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조례로,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음.
- 향후 지역 사회적경제 창업 촉진과 지속 발전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되며,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능력 제고 및 제품 품질 향상을 통한 자생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